

## 서 면 질 문 서

=====

질문의원명	김인제	소속위원회	도시계획관리
질문대상자	도시재생본부장		
질문제목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용역 계약 해지 후 사후처리 등		

1.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최종적으로 용역계약이 해지된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 용역에 대하여 도시재생본부는 ‘서울 전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실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취득비용이 용역 계약비 대비 과다’라는 사유와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4항 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를 근거로 귀책사유가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있음을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았다.(재생정책과-13112, 재무과-56350 참조)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2017년 도시재생본부 행감자료 1264p.에서도 ‘사전검토/자문의 이해관계자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업체와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등록을 해야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도시재생본부는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해당업체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젠트리피케이션 GIS 정책지도 구축, 용역기간 2016.12.1.-2017.3.20)을 성북구로부터 수주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용역의 결과가 2017.11.1. 현재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http://sbddata.seongbuk.go.kr>)에 ‘젠트리피케이션 GIS 정책지도 구축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다.

또한 해당업체의 대표자인 송규봉은 ‘서울시 뉴딜일자리(서울체험관광상품 기획보조요원) 빅데이터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가 취해졌다고 보기 힘들다.

용역 및 민간위탁 등에서 사전자문, 전문가자문 등에 참가하고, 이후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는 작년 행정감사를 통해 다수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용역 및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

제출된 행감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본부는 사전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재생본부장의 의견은?

2. 행정사무감사자료 1296p. 비공개 사유별 건수 중 제2호가 3년간 총 182건, 2015년과 2016년 평균 80건이 넘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도시재생본부에서 생산되는 문서 중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사안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데, 비공개 사유를 잘못 기입한 것인지 여부와 제대로 기입한 것이라면 예시를 통해 주로 어떤 것들이 제2호에 해당했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람.